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
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
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에 공

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
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따른”을 “따른 설명회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으로, “장소”를 “장소(온라인 설명회의 경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 공청회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소”를 “장소(온라인 공청회의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공청회가”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나. 다음의 조치사항

-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온라인 공청회 개최

나.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3조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지역 환경현황

3.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다른”을 “다른 설명회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
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
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청회를 개최하려”를 “공청회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청회가”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④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나. 다음의 조치사항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온라인 공청회 개최

나.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제58조의2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등) 법 제42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조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
견수렴에 관한 사항

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포
함한다)에 관한 사항

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
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에 관한 사항

사. 협의 내용 이행, 사업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3. 시·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제59조의2(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지역 환경현황

3.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에 과목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에 과목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에 과목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에 과목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에 과목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에 과목4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10호 중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을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또는 숲경영체험림 사업”으로 한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제4호에 따른 재조림,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과목36) 및 37)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의2,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제58조의2, 제59조의2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 운영) ① -----회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포함한다)는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생략)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u>따른</u>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u>장소</u>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u>따른 설명회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u> ----- ----- ----- <u>장소(온라인 설명회의 경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신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략환경영향평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②
(생략)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
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생략)

<신설>

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
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 공청회 또는 법 제13
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

-----.

1. (현행과 같음)

2. ----- 장소(온라인
공청회의 경우 온라인 공청회
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현행과 같음)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
에 대하여 해당 전략환경영향평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생략)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

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

⑥ ----- 제5항 -----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나. 다음의 조치사항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생략)

가. 온라인 공청회 개최

나.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
----- 제2항제2호나
목-----

-----.

제31조의2(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지역 환경현황
3.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삭 제>

④ -----
 따른 설명회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

 ---. -----

 -----.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청회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려-----

-----.

1. ~ 3.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가 -----

-----.

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
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
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
명자료 등을 게시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
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2)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온라인 공청회 개최

나.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 제2항제2호나목-----

-----.

제58조의2(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등)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조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절차상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에 관한 사항
- 사. 협의 내용 이행,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3. 시·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신 설>

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제59조의2(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지역 환경현황
3. 환경보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81